

DDA 각료회의 참가 결과 보고

1. 출장 개요

□ 출장 목적

- 제네바 DDA 각료회의 (7월 21- 25일) 참가
 - 농업과 비농산물협상(NAMA) 세부원칙(modality) 합의 도출
 - 7.21일부터 시작된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개진
 - 관계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의견교환 및 공조강화

□ 출장자

- 국제농업연구센터 연구위원 송 주호
- 농림수산물식품부: 제1차관, 국제농업국장, 다자협상과장, 수산통상과장, 김철 서기관, 조일환·정용호·강민철·이인섭·최정미 사무관, 김진수 주무관, 한현자(통역), 조정희 연구원(해양수산물개발원)

□ 출장일

- 7월 18일 - 31일 (당초 18- 27일이었으나 현지 회의연장으로 출장기간 연장)

□ 주요 일정

- ① 각료급 그린룸(Green Room) 회의 : 7.21~29일간 수시개최
 - 농업/NAMA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주요 30개국 협의
- ②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(TNC) : 7.21(월)~30(수)
 - 전일 그린룸회의 결과 보고 및 각국의 입장 표명
- ③ G10, G33 각료회의 : G10(7.20), G33(7.20), G33 각료기자회견(7.21)
 - 주요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방향 마련 및 각료선언문 채택
 - * SOM급, 실무자급 G10, G33 회의는 수시로 개최
- ④ 양자협의 : 노르웨이(7.23), 중국(7.24), 대만(7.25)
 - 관세상한, SP/SSM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협상동향 파악

2. 주요 논의 내용 및 평가

- 농업/비농산물시장접근(NAMA) 분야 세부원칙(Modalities)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
 - 주요 7개국(G-7) 협의를 통해 특별품목의 감축면제 인정여부, 미국·EU의 보조금 감축률 등 대부분 주요쟁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잠정타협안을 도출하였으나,
 - 개도국특별긴급관세(SSM)와 면화보조금에 대해 미국, 인도, 중국 등 주요국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
- Lamy 사무총장이 제시한 잠정타협안에는 우리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수 포함되었음
 - 전체세번의 12%를 평균 11% 감축하는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5%의 감축면제 대우 확보
 - 전체세번의 5.3%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낮은 관세감축율을 적용하되 TRQ(저율관세쿼터) 물량을 증량
 - 특별긴급관세(SSG)를 유지하면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(SSM)을 신규로 도입해 수입량 증가, 수입가격 하락시 추가관세부과 가능

3. 상세 논의 내용

가. 각료급 그린룸회의 및 소그룹 고위급 회의

㉠ 관세상한

- 일본과 스위스는 민감품목에 대한 보상없는 관세상한 예외와 비민감품목에 대한 일부(2%)는 관세상한의 예외가 되어야 함을 강조
- 우리나라는 명시적 관세상한은 국내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G-10의 핵심쟁점인 만큼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
- 이에 반해 수출국들은 비민감품목은 관세상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며 민감품목은 TRQ 증량의 보상이 필요함을 주장
- 선진국의 경우, 보상을 전제로 모든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의 전체세번의 1%까지 관세 100% 초과가능하도록 잠정합의도출

* 개도국의 경우 150% 초가가능하나 특별품목은 관세상한의 예외적 취급

② 민감품목

- 우리나라, 스위스, 일본 등 G10국가들은 민감품목의 개수에 대해 의장안의 높은 수치(6%)를 주장하였으며 신규 TRQ 창설이 중요함을 강조
- 호주, 우루과이 등 수출국들은 민감품목 개수는 4%, TRQ 증량은 6%를 주장하였으며 신규 TRQ 창설에 대해서는 반대
- 잠정 합의안에서 민감품목 수치는 4%로 하고 TRQ 증량을 4%로 하는 것에 다수의 국가들의 합의하였으나 신규 TRQ 창설에 대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입장대립이 심하였으며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지는 못함

* 우리나라, 대만, 이스라엘은 소비량 데이터 제출시기에 대해 협의

③ 특별품목(SP)

- SP는 전체세번의 15-18%, 감축면제 SP는 2-6%, 평균감축률은 12-14%를 G33 공동입장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대응
 - 중국은 별도의 관세감축면제 구간의 도입(2-tier)을 강하게 주장
 - 우리나라와 인도, 인도네시아 등은 합리적이고 상당한 수의 감축면제 세번수가 필요함을 강조
- 수출국들은 SP 수가 최소수준이어야 하며 1-tier 방식의 도입을 주장
- 잠정타협안에는 전체 세번의 12%에 한해 평균 감축률 11% 적용하되 그중 5%는 감축면제 가능하다는 내용 규정

④ 개도국 특별긴급관세(SSM)

- 지나친 제약 없이 UR 양허관세(현재의 관세수준)를 초과하는 SSM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했음
 - G33과 공조하여 우리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발동기준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거론됨
- 미국은 수입량 증가 수준에 따라 (UR 양허관세-doha 양허관세)의 1/3, 2/3, 3/3의 추가

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외함

- 우리를 비롯한 G33은 미국 제안이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3차 수정안의 틀 안에서 협상을 이어나감
- 잠정 타협안은 세번의 2.5%에 한해 수입량이 직전 3개년 수입량의 140%(trigger)를 초과할 경우 UR 양허관세 초과 허용하되, remedy cap은 15%를 제시
- G33은 주요국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발동기준(140) 설정 반대, 발동 대상은 세번의 7%, remedy cap은 40%, cross-check은 수용불가함을 주장
- 발동기준[115-120]~[135-140]일 경우 양허관세의 33% 또는 8%p 중 높은 것 [135-140] 이상일 경우 양허관세의 50% 또는 12%p 중 높은 것을 추가관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회람했으나 그린룸에서 수용되지 않음

나. 양자협의를

① 노르웨이 농식품부 차관 면담

- 관세감축율과 관련, EU가 제시한 최상위 구간감축률 70%에 대해 노르웨이측은 이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강조
- 우리측도 EU 제안은 너무 높으며, 가장 낮은 수치를 지지함을 언급
- 관세상한과 관련, 비민감품목 중에서도 고관세 품목이 있다는 점에서 G-10 국가가 공조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
- 우리측은 규모의 영세성, 농업인구의 노령화 등 우리농업의 취약성을 적극 언급하며 DDA 협상에 있어서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강조

② 중국 농업부 차관 면담

- 양자협의를 전일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 해소를 위해 구성된 G7 논의 동향 문의 및 SP·SSM 등 DDA 협상 관련 공조강화
- 중국은 G7 논의가 농업은 SP, SSM, TRQ에 관한 논의가 집중되었으며 NAMA 협상에서 특히 대립이 심한 것으로 평가함
- ※ DDA의 성패는 미국과 EU에 달려있으며 실패의 책임은 미국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
- SP와 관련해서는 관세감축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며 특히 별도의 관세감축 면제 구간을 설정(2tier)해야한다고 강조함

- 우리는 SP와 SSM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한다면 DDA 협상에서 양국간 협력과 상호 지지를 강화해나가자고 제의함

③ 대만 농업위원회 차관 면담

- 양국의 주요 쟁점별 입장을 확인하고, G-10 그룹내에서 공조를 강화하여 공동의 관심사에 같은 입장으로 대응하기로 협의
- 또한, 우리측은 UR당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점을 설명하며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최우선과제임을 강조
 - 대만측도 우리와 유사한 입장으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DDA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음을 설명
- ※ 이외에도 양측 고위급 대표가 만나 우리측이 협상동향을 설명하고 소비량데이터 제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

다. 현지 홍보활동

- 현지 특파원 및 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상동향 및 주요이슈에 대한 우리 대응을 설명
- 중요 시점에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

4. 협상대표단과의 업무협의

- 제 1차: 7월 19(토)
 - 참석자 : 송주호, 이준원 농무관, 안용덕 과장, 이호열 서기관, 김진수 주무관
 - 주요 내용: 각료회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 정리
- 제 2차: 7월 21(월)
 - 참석자 : 송주호, 김철 서기관, 강민철 사무관, 이인섭 사무관, 정용호 사무관, 최정미 사무관, 김진수 주무관
 - 주요 내용: G10, G33 모임에 대한 우리 입장 정리

5. 향후 전망 및 대응계획

□ 향후 전망

- 협상 모멘텀이 약화되어 향후 다시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 - 이번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이 합의되면, 금년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여타분야 협상을 완료하여 DDA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
 - 향후 본격적인 협상 재개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후로 미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
- 수산보조금은 농업/NAMA에 비해 쟁점이 많이 남아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

□ 향후 대응계획

- 향후 협상 재개 관련 각급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입장이 반영된 진전사항이 최종타결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
- 지금까지의 협상 동향 및 결과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집중 홍보
 -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 배포, 농민단체 및 전문가그룹 설명회 등
- 내부적으로 협상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지금까지의 논의내용을 총정리하고 미해결된 쟁점 중심으로 향후 대응전략을 재점검
- 세부원칙 타결이후 이행계획서 작성단계에서 쟁점이 될 사항들에 대한 연구 및 사전적 준비
 - 개도국지위 유지 전략 및 품목별 양허전략 사전 검토
 -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품목별 영향 분석

참고 1. DDA 각료회의 대표단 주요 활동

일	시	내 용	주요내용
7.20 (일)	11:30	G33 각료회의	특별품목, SSM 대응 협의
	17:15	G10 각료회의	관세상한, 민감품목 등 대응방향 협의
7.21 (월)	09:30	SP/SSM 사전회의	특별품목/SSM 대응 협의
	10:00	비공식 TNC 회의	주요국 발언, 특별품목, SSM 등 우리입장 강조
	11:30	SP/SSM소그룹 회의	SSM 관련 미국 제안 논의
	15:15	G33 기자회견	특별품목/SSM G33입장 설명
	15:00	그린룸회의	특별품목, SSM 우리입장
7.22 (화)	09:00	G10 회의	그린룸 공조 대응방향 협의
	09:15	SP/SSM사전회의	특별품목/SSM 대응 협의
	10:00	민감품목소비량 회의	민감품목 소비량 데이터 논의
	10:0	비공식TNC 회의	그린룸 논의 동향
	10:45	SP/SSM소그룹회의	SSM 관련 미국 제안 논의
	15:00	그린룸회의	민감품목, 특별품목 등우리입장 강조
	19:30	농협조합장과 만찬	울산농소농협조합장 박기수 황형성 농협 통상협력팀장
7.23 (수)	08:30	규범의장 면담	수산보조금 논의
	09:00	G10 회의	그린룸 대응방향 협의
	09:00	G33	그린룸 논의 동향 설명
	10:00	SP/SSM소그룹회의	UR양허관세 초과 SSM 논의
	10:00	비공식TNC 회의	그린룸 논의 동향
	10:15	노르웨이양자면담	관세상한, 민감품목 등 협의
	12:00	쿼터내관세 소그룹회의	개도국 감축률
	15:00	해외통상자문관 면담	주요국 동향 파악

일	시	내 용	주요 내용
7.24 (목)	09:00	G10 회의	그린룸 공조 대응 협의
	10:00	비공식 TNC 회의	그린룸 논의 동향 설명
	11:00	관세상한 회의	관세상한 논의
	11:10	중국 양자면담	G7 논의동향 파악/양국 협력 강화 방안 논의
	12:30	연합뉴스 특파원 오찬	협상 동향 설명
	15:00	G10 SOM회의	그린룸 대응 방향 협의
	15:30	수산보조금 공조회의	수산보조금 논의
	20:00	그린룸 회의	주요 쟁점 논의
7.25 (금)	09:00	G10 회의	그린룸 대응방향 협의
	10:00	비공식 TNC 회의	그린룸 논의 동향 설명
	15:30	대만 양자면담	DDA 주요 이슈 협의
	16:30	G33 회의	특별품목/SSM G33입장정리
	17:45	G10 회의	그린룸 대응방향 협의
	18:00	그린룸 회의	농업/NAMA 잠정합의안 도출
7.26 (토)	09:00	G-10	그린룸 대응 협의
	10:00	비공식TNC	그린룸 논의 동향 설명
	11:00	G-33 Hod	SSM 대응 협의
	11:30	SSG/개도국 민감품목 소그룹회의	SSG, 개도국 민감품목
	14:00	쿼터내관세 소그룹회의	쿼터내관세 협의
7.27 (일)	14:30	SSM 관련 의장면담	G33 과 의장 면담
	19:00	그린룸 회의	주요 쟁점 논의
7.28 (월)	11:00	G-33 Hod	특별품목, SSM 대응 협의
	19:00	파견기자단 간담회	협상동향 및 주요쟁점 설명
7.29 (화)	14:15	G-33 회의	특별품목, SSM 대응 협의
	17:30	그린룸 회의	주요 쟁점 논의
	19:00	비공식 TNC 회의	DDA 결렬 선언

참고 2. 잠정타협안 주요 내용

- ◇ **최상위 구간 관세감축률**
 - 선진국 70% (3차 수정안 : 66-73%) * 개도국은 선진국의 2/3
- ◇ **관세상한** * 선진국기준만 규정
 - 민감품목은 보상을 전제로 관세 100% 이상 유지 가능
 -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전체 세번의 1%까지 보상을 전제로 관세 100% 이상 유지 가능
- ◇ **민감품목(선진국 기준)**
 - 개수 : 전체 세번의 4% (3차 수정안: 4-6%) * 개도국은 1/3 추가
 - TRQ 증량 : 국내소비량의 4% (3차 수정안: 4-6%) *개도국은 2/3수준
- ◇ **특별품목(SP : Special Product)**
 - 전체 SP 개수 : 전체 세번수의 12% (3차 수정안: 10-18%)
 - 관세감축면제 SP : 전체 세번수의 5% (3차 수정안: 0-6%)
 - 평균감축률 : 11% (3차 수정안: 10-14%)
- ◇ **개도국 긴급수입관세(SSM : Special Safeguard Mechanism)**
 - 연간 2.5% 세번에 한하여 UR 양허관세 초과 가능
 - UR 양허관세 초과가능한 SSM은 수입량이 기준물량(과거 3년 평균 수입량)의 140% 초과시 발동, 추가관세 부과시 UR 양허세율 초과한도는 당해년도 양허세율의 15% 또는 15%p 중 높은 수치로 한정
 - 단, 수입량 증가시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는 SSM 발동 제한
- ◇ **SSG(특별긴급관세)** * 선진국기준만 규정
 - 발동가능품목수를 이행 첫날 1%에서 시작하여 7년간 철폐
 - 단, 추가관세 부과시 UR 최종양허관세 초과 금지 제한
- ◇ **무역왜곡보조총액(OTDS)** * 선진국기준만 규정
 - EU는 80%(3차 수정안: 75-85%), 미국은 70%(3차: 66-73%) 감축
- ◇ **관세감축공식 계수 및 개도국 신축성**
 - 계수 : 선진국 8, 개도국 20/22/25 중 선택
 - 낮은 계수를 사용할수록 높은 수준의 신축성 부여
- ◇ **신축성 제한요건 (anti-concentration)**
 - 세번 기준 최소 20% 또는 수입액 기준 최소 9%에 공식감축율 적용
- ◇ **분야별 자유화 (무세화)**
 - 주요 WTO 회원국은 최소 2개 분야의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